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학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계절학기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방학 중에 학칙에 규정된 이수 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.
- **제3조(개설교과목)** ① 개설교과목은 본교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과 기타의 교과목으로 한다.
 - ② 개설교과목 중 수강등록 인원이 12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될 수 있다. <개정 2019.02.20.>
- 제4조(수강자격)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재적생으로 한다. 단, 휴학생의 경우 총 휴학기간 동안 5학점까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다.
- 제5조(신청학점 및 강의시간) ① 계절학기당 최대 7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.
 - ② 1학점당 강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**제6조(수강등록)** ①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한 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수강신청한 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.
 - ③ 폐강된 과목의 수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, 취소된 학점 범위 안에서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.
- 제7조(미등록 수강취소) 계절학기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.
- 제8조(수강료)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신청학점 단위로 책정한다.
- 제9조(수강철회)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철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철회 또는 폐강에 의한 수강취소의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한다.
- 제10조(학점관리) ①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은 총 졸업학점 및 총 평점평균에 산입한다.
 - ②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계절학기로 별도 기재하고 관리한다.
- 제11조(성적처리) 수강과목의 결석 횟수가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하면 해당과목의 성적은

'F'로 처리한다.

제12조(강의료 지급) 강의료는 강사의 시간당강의료를 적용하며, 강의시수에 15회를 곱하여 산정하여 지급한다. 〈개정 2023.09.20.〉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